

# EPR(생산자책임재활용) 정보

## 재활용 실적인정을 위한 인정범위 안내

환경공단이 제시한 '재활용실적인정 세부기준' 내용을 사례로 위주로 발췌하여 소개한다.

### 1. 재활용실적 인정을 위한 계량증명서 인정범위

- 적용원칙 : 임의 조작, 수기 작성, 1도 계량 불인정

- 적용시기 : 2011년부터
- 계량프로그램을 통한 자동(실시간) 계량을 원칙으로 함

- 재활용 실적 인정세부기준

- 임의 조작 : 계량증명서 중 재활용실적 인정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수기재사항으로 지정하여 수동 조작을 통한 사후 입력 등의 임의 조작 불가  
※ 필수기재사항 : 계량표 일련번호, 계량일시, 차량번호, 총중량, 공차중량
- 수기 작성 :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는 수기 작성 실적 불인정
- 1도 계량 : 자자체·공인계량소 이외 1도 계량 불인정

※ 참고 : 환경부 예규 제432호 (2011. 3. 11)

- 회수·재활용실적 증빙자료 중 계량대를 임의 조작하여 발행한 계량 증명서, 수기로 작성한 계량증명서는 불인정
- 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이 적발된 비율에 따른 자격제한

구 분	1% 미만	1%이상 5%미만	5%이상 25%미만	25%이상
적발비율	주의	경고	1년간 자격제한	2년간 자격제한

\* 적발된 비율(허위 회수·재활용실적량 ÷ 의무이행결과보고서상의 회수·재활용실적량)

### 2. 사례로 살펴보는 실적인정 기준

사례 1. 직접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재활용하는 업체의 경우, 동일품목에 대한 혼합재질로 반입 받아 자체 선별 및 재활용하기 때문에 각 재질별 별도 계량이 어려운바, 전체 혼합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?

- 혼합품 매입품에 대한 계량증명서는 인정

-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 및 매출 실적을 기준으로 품목 확인

\* 1. PS, PP 등 동일품목 이내 재질이 혼합된 경우 해당

2. 캔, 유리병 등 다른 품목이 혼합 반입된 경우는 인정 불가

**사례 2.** 수기 작성 계량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데,  
다음의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?

- 정부기관(지자체) 발행 계량증명서
- 일부 기재사항의 수기 입력

- 정부기관(지자체)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수기 작성 인정  
 \* 가급적 수기 작성 계량증명서는 지양하도록 개선유도
- 일부 수기 작성 인정  
 \* 거래처, 품명에 한정하며, 필수기재사항은 수기 작성 불인정

사례2

**사례 3.** 일련번호가 기입되지 않거나 계량증명서 자체에  
일련번호 입력란이 없을 시 인정 여부?

- 지자체·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일련번호 미기재 인정  
 \* 향후 불인정방안 검토 추진계획  
 - 실적 점검 시 일련번호 고의누락 발견 시 계량 실적 불인정

사례3

**사례 4.** 총중량 시간과 공차중량 시간이 동일(1도 계량)한 경우 인정 범위  
- 지자체, 공인계량소, 민간업체의 각 계량증명서별 인정 여부

- 지자체·공인계량소에서 계량증명한 증명서에 한해 1도 계량 인정  
 - 민간(자체) 계량대의 경우 1도 계량 불인정  
 \* 향후 공인계량소의 경우도 1도 계량 불인정방안 검토계획

사례4

**사례 5.** 재활용제품 매출 부분에 있어 계량증명서를 타 증빙서류로  
대체 가능 여부

- 단일재질의 경우 현 상거래 상 재생원료를 별도 계량하지 않고(톤백단위로 무게를 출정하여 출고) 세금계산서와  
거래명세표에 의한 거래가 통용되고 있는데 이 경우 인정 가능 여부

- 원칙적으로 계량증명서가 있을 시 실적 인정  
 ● 단, 계량시스템 개선(인디케이트 설치)을 통해 발행된 계량증명은 인정 자체 계량대의 경우 1도 계량 불인정

**사례 6.** PSP재질의 경우 반입시 부피 대비 중량이 매우 낮아 계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. 이에 PSP 재질에  
대해서도 매입(반입)부문에 대한 계량 증명서가 필히 첨부되어야 하는지?

- PSP품목(EPS포함)의 특성을 감안하여 관리대장 등을 통한 매입 실적 인정  
 ● 매입에 대한 계량 증명은 현행을 유지하되,  
 ●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이 되는 매출에 대해서는 계량증명서 반드시 첨부